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0. 5. 19.(화) 14:3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허 욱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표철수 부위원장 (1인)

---

##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35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표철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외부 일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제2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24차, 제25차 및 제2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마> ‘SBS미디어 홀딩스(주)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은 안건 논의를 공개로 진행하되, 사업자 의견청취는 영업비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0-28-118)

###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국제협력 담당관계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 강필구 국제협력담당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남북 간 상호교류 및 조사·연구 등의 지원 근거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신설됨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작년 12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일부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2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재입법 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부처 이견조정 협의 및 법제처 협의 등을 거쳐 동 시행령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협력사업 및 조사·연구의 대상(안 제8조의2제1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남북한 방송통신기술협력에 관한 교류 및 협력사업, 전기통신역무 제공, 남북한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산업·정책·제도 등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 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안 중 변경사항 및 의견입니다. 법제처 사전 검토 의견, 관계기관이 제시한 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제8조의2제1항 제1호(남북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제4호(남북한 방송통신용어, 방송언어의 현황 및 비교 조사연구)는 부처 간 소관업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내일부터 6월까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1일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방송통신 분야 남북교류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서 남북 교류협력의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 보고한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또 재입법 예고까지 했었는데, 안건을 보면 이견이 있어서 삭제를 했었는데, ‘남북한 방송통신용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특정 부처에서 이견이 있다고 삭제요구를 해 온 것입니까?

○ 강필구 국제협력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그것은 어느 부처에서 그런 것입니까?

○ 강필구 국제협력담당관

- 문체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방송언어는 이해한다고 해도 남북한의 방송통신용어까지도 이의제기를 했던 것입니까?

○ 강필구 국제협력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남북교류 협력에 관련된 행위는 다른 범위,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 범위에서는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 강필구 국제협력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상당수가 수정되어야 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은 상태입니까?

○ 강필구 국제협력담당관

- 일부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대상이 아니고, 통일부에서 제8조 제3항을 신설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절차와 규정을 따른다는 삽입 조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그런 식으로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넣어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 입장입니까?

○ 강필구 국제협력담당관

- 그렇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만큼이나 각 부처 내 영역다툼이 치열해서 우리 위원회가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매우 애로가 많다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의 법정위원회인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가 방송통신 분야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통해서 남북 간 화해와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재입법 예고 과정에서 각 부처의 관계를 잘 풀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남북한의 방송통신 교류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서는 통일까지 가는 길에 큰 역할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 중심에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방금 존경하는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견들이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정말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서로 간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견들을 조정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무처에서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 사업들을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시행령이 나왔기 때문에 남북 간 화해 협력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사무처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동철 기획조정관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제8조의2 제1항 제1호(남북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제4호가 이견이 있어서 삭제되더라도 제8조의2 제1항의 마지막 일반조항, 기타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 및 조사·연구에 포함 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 강필구 국제협력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0-28-119~126)**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6조제2항 등을 위반한 8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배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 그리고 민원신고와 언론 보도된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 8개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과입니다. 현장조사는 '19년 8월~11월까지,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접수는 '20년 2월~4월까지 했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사업자 일반현황입니다. (주)넥스트매치는 데이팅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정보 제공 사업자입니다. (주)이에스엔운영은 가상통화 거래정보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청주방송은 지상파방송사업자입니다. (주)탈잉은 재능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페인트인포는 DIY인테리어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헬스벨런스(주)는 건강기능성식품 판매회사입니다. 홈플러스(주)는 유통회사입니다. (주)힐링페이퍼는 의료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경로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이에스엔운영은 미상의 해커가 악성코드 삽입 후 이용자 개인정보를 23건 유출했습니다. (주)청주방송은 담당자 메일발송 실수로 전체 수신인의 이메일주소가 노출되었습니다. 1,683건입니다. (주)탈잉은 미상의 해커에 의해 테스트 DB서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에 DB가 삭제되었습니다. 모두 38만여 건입니다. (주)페인트인포는 홈페이지 수정작업 중 이용자의 주문정보가 1건 노출되었습니다. 헬스벨런스(주)는 미상의 해커에 의해 DB서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에 삭제되었습니다. 약 81,000여 건입니다. 홈플러스(주)는 미상의 해커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회원의 OK캐쉬백 정보를 해커 소유의 카드번호로 등록했습니다. 유출건수는 4만 9천여건으로 추정되고 항목은 이용자 배송지주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넥스트매치는 임원이 소개팅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년 전 무단으로 열람한 사안입니다. (주)힐링페이퍼는 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의무를 위반하여 한국소비자연맹으로부터 신고가 되었습니다. 위반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업자가 1개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위반 사업자 1개사, 개인정보 양수 시 고지의무 위반을 한 사업자 1개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또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고, 처리방침의 변경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사업자가 1개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를 위반한 사업자는 2개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근권한 위반, 안전한 인증수단 미적용, 침입차단시스템 설치·운영의 소홀,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를 망분리하지 않은 사업자가 총 5개사입니다. 위반사항은 서로 중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 위반사업자가 3개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중 암호화 위반 사업자는 4개사입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사업자는 2개사입니다. 사업자 의견입니다. 먼저 홈플러스(주)는 비정상적인 로그인에 대한 침입탐지정책 누락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당시 실무자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개인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웹방화벽에는 정상적인 침입차단 및 탐지기능이 설정·운영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수용했습니다. (주)힐링페이퍼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해서 '회원 가입 시'에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방침에 별도로 구분·명시하지 않았지만 '상담신청', '견적문의' 등 각 단계별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은 처리방침에 명시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구가 일부 누락되었지만, 각 단계별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처리방침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성형전적 서비스 특성상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시 수집항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습니다. 시정조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은 (주)넥스트매치 등 8개사에 대해 내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공표는 아래 별표를 보시면 과징금 부과 사업자 중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주)탈잉과 헬스벨런스(주) 등 2개사에 대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득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입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모두 6개사입니다. (주)탈잉 등 5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주)힐링페이퍼는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은 (주)탈잉 등 3개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4호·제6호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탈잉입니다. 관련 매출액은 (주)탈잉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3억 7,803만 6,000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를 적용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000분의 21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793만 8,000원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필수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96만 9,000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추가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79만 3,000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주)탈잉에 대해 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산출내역(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헬스밸런스(주)입니다. 관련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4억 9,622만 4,000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를 적용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000분의 21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5,242만원으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필수적 가중·감경 관련하여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621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추가적 가중·감경 관련하여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524만 2,000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과징금은 헬스밸런스(주)에 대해 2,09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산출내역(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힐링페이퍼입니다. 관련 매출액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3억 9,757만 6,000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은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를 적용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000분의 21을 곱하여 기준금액을 5,034만 9,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 관련하여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517만 5,000원을 가중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517만 5,000원을 감경했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503만 5,000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징금은 (주)힐링페이퍼에 대해 4,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산출내역(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사 최종 과징금 산출내역(안)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고, 3개사 총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이에스앤운영 등 3개사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에스엔운영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작고, 위반행위 관련한 매출액이 많지 않아,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청주방송은 역시 위반행위 관련한 매출액이 많지 않아,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홈플러스(주)의 경우에는 온라인 회원의 로그기록을 3개월간 보관하고 있어 해커의 공격기법과 개인정보 유출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주)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수사기관에서 해커를 검거하여 유출 및 훼손경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재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 사항입니다. (주)넥스트매치 등 8개사가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 9] 및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주)탈잉입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소기업으로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는 (주)탈잉에 대해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이전 시 통지의무를 위반한 (주)이에스엔운영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유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는 (주)이에스엔운영에 대해서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의무를 위반한 (주)힐링페이퍼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관련해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는 (주)힐링페이퍼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의무를 위반한 (주)청주방송과 (주)페인트인포 2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관련해서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주)청주방송과 (주)페인트인포에 대해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각 가중하고, 특별히 감경할 사유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는 (주)청주방송과 (주)페인트인포에 대해 과태료 1,300만원을 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주)넥스트매치 등 6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입니다.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주)넥스트매치, (주)이에스엔운영 2개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각 가중하고, 위반행위가 3개 이상인 (주)탈잉, 헬스밸런스(주) 2개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가중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감경 관련해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한 (주)넥스트매치 등 6개사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과태료입니다. (주)청주방송, 홈플러스(주) 2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500만원을 부과하고, (주)넥스트매치, (주)이에스엔운영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800만원, (주)탈잉, 헬스밸런스(주) 2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주)페이트인포와 (주)힐링페이퍼 2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관련해서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한 (주)페이트인포와 (주)힐링페이퍼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과태료는 (주)페이트인포와 (주)힐링페이퍼 2개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최종과태료 산출내역(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사업자 과태료 총액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발 사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발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고발하지 않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조치 통보는 6월에, 이행점검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상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과태료·과징금 의결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개인 정보보호 경각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이에스엔운영과 또 (주)청주방송 같은 경우 역시 매출이 규모가 작아서 할 수 없이 과징금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주)청주방송과 같은 언론사가 이런 처분 대상에 꾸준히 올라오는 데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주의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위반사업자들 사실 조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시정조치가 통보되고 또 위반 사업자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때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주)탈잉이라든지 (주)넥스트 매치 이런 업체들은 청년 세대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사업화한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상당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스타트업들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임직원들이 개인정보 관련된 법이나 제도의 내용,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또 관리적 조치사항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사업에 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제재 같은 현재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 기업들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사전 지원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개인정보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스타트업 사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나 또는 컨설팅에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번에 보고된 피심인 가운데 눈여겨볼 사업자가 두 곳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창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나는 (주)청주방송이고, 하나는 홈플러스(주)입니다. 청주방송은 담당자 이메일 발송 실수로 전체 수신이메일 주소의 약 1,600여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 경로가 담당자 실수라고 하지만 청주방송이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사업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법규 등 관련 법령 또한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임직원 모두가 되새기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홈플러스(주)는 해커에 의해 회원들의 OK캐쉬백 정보를 해커 소유의 카드번호로 등록해서 이용자의 배송주소 약 49,0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주)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장인데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이런 대기업 유통업체가 해커의 공격에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주)의 경우 해커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경찰수사가 진행되면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 혐의가 지금 제기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수사 완료 후 법 위반 사안들이 다시 상정되는 것입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저희가 경찰청의 수사결과를 나중에 통보해 주도록 요청했고, 그렇게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유출경로를 명확하게 조사를 못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조사를 해서 다시 안전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징금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피심인 제출 의견들을 보면 우리 위원회의 처분서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였고, 또 지적한 위반 사안들도 다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사무처에서 제시했던 시정조치(안), 즉 과태료 그리고 과징금 처분(안)이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혹시 해커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 경위를 확인하지 못해서 처분을 유예했다가 향후 확인이 되어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결국은 해킹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에 의해서 해킹 경위나 피해 정도가 밝혀지지 않으면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다만, 경찰이 먼저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여 통보해 주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분한 적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 홈플러스 사건은 경찰은 수사를, 저희는 조사를 거의 동시에 들어간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서 그렇고,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한 경우 저희가 역으로 다시 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해서 처분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가 선행조사를 하고 해킹과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좀 더 엄격한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이런 절차들은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20-28-127)**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해 방송지원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舊 티브로드), 舊티브로드동대문방송 (주)현대에이치씨엔, (주)씨엠비에 대한 재허가에 아래와 같이 재허가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동의한다’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사업자 공통사항으로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상생 관련된 조건입니다. ‘방송사업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계열PP, 종편·보도계열PP, MSP를 제외한 PP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적 조건입니다. SKB에 대해서 지역채널 관련된 조건입니다.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투자,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재난방송 등 지역 콘텐츠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과기정통부 조건 안에 지역채널 운영계획 내에 지역채널 독립성 확보방안, 지역민의 방송제작 참여방안 및 지자체·지역방송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을 포함시키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역채널 제작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합병관련)해서는 합병 이후 합병 변경허가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과기정통부 조건에 합병 변경허가 조건에서 정하지 않거나 재허가 조건이 합병 변경허가 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재허가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현대HCN과 CMB에 대한 조건입니다. 지역채널 관련해서 앞서 보고드렸던 SKB 내용과 같은 내용 중에서 지역채널 운영계획에 지역민의 방송제작 참여방안 및 지자체·지역방송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지역채널 활성화계획을

포함하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권역별 지역채널을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하여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개 사업자 공통 권고사항입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용약관 중 위약금, 해지절차 등 고객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각하여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SKB와 현대HCN에 대해서는 선거방송 법률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방송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과기정통부에 정책제안 사항으로 통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특정 사업자의 '본방송' 실적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 간 '본방송 비율' 비교 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방송'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두 번째 향후 현대HCN의 PP평가기준 등 승인 시, PP편성을 위한 평가기준에는 '방송다양성' 평가항목을 복원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에는 '큐톤광고 제공실적' 평가항목을 삭제하여 불공정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SKB·현대HCN·CMB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에 이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았고, 올해 3개월에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서 4월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SKB와 티브로드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B가 4월 30일에 합병을 한 후에 5월 6일 합병 변경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5월 7일~8일까지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자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결과 주요내용입니다. 방송·법률·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약식심사위원회가 대상 사업자의 재허가 신청서 및 과기정통부 조건(안) 등을 검토한 결과, 재허가에 동의하되 재허가 조건을 추가하고 일부 수정하며, 권고사항을 부과하고 정책제안 사항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약식심사위원회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 추가 수정 취지의 주요내용은 중소PP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지역채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권고사항 부과 취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시청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권고하고자 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시점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안)은 협상력이 약한 중소PP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보다는 「중소기업법」을 참조해서 해당 조건의 적용 대상을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하 PP와의 계약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총 PP사 중 67% 정도 해당됩니다. 다음입니다. 심사위원회가 현대HCN의 평가기준 등과 관련하여 제시한 조건(안)은 이미 기존 PP 평가기준에 대해 과기부의 승인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향후 해당 기준 등 개정 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재허가 조건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 부가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 등을 위해 조건보다는 과기정통부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채널 활성화 관련해서는 심사위원회 조건(안) 외에도, 지역민의 참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 지역사업자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허가유효기간 관련해서는 CMB의 경우 재무적 특이사항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단축된 유효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현대HCN, CMB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안건인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들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알려졌습니다. 보니까 2016년도 약 2조 1,692억원이던 SO 전체 매출액이 2018년도에 2조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입자 수를 보면 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7년도에 IPTV가 1,433만이고, SO가 1,404만이었는데 2018년도 가입자 수를 보니까 IPTV가 1,566만이고, SO는 1,38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권고사항과 또 여러 조건, 정책제안 이런 내용들이 꼼꼼하게 잘 담겨져 있어서 지역채널을 활성화하고, 또 협력업체 상생 이런 조건들을 잘 정리해서 이번 방통위 재허가 사전동의를 통해서 여전히 방송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SO들이 보다 공정하고 활발하게 서비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의 사전동의 조건과 권고에 동의합니다. 고생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과기정통부에서 이미 꼼꼼하게 심사를 했으나 우리 심사위원회가 과기정통부 조건(안)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제고 및 시청자 권익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잘 냈다고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유료시장은 M&A를 통해서 통신사업자 위주로 시장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심사 대상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이미 합병 등기를 완료했고, 현대HCN도 매각을 공시하는 등 시장구조 개편의 중심에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는 통신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입하면서 우려되고 있는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및 시청자의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의 사전 예방조치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 가운데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해 선 공급, 후 계약이라는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조건 부가로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늦어짐으로써 중소PP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PP의 콘텐츠 투자가 부실해지는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건이 협상력이 약한 PP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대형PP는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소PP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사무처의 수정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지역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은 전국 사업자인 통신사가 대주주인 SO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전국 사업자가

운영하더라도 SO의 지역채널은 지역성과 편성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대주주의 과감한 투자로 지역채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만 유료방송 M&A의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CMB에 대한 점점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CMB가 타 사업자에 비해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또 재무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상당한 금액을 임원에게 대여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역시 필요한 점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여겨집니다. 사무처에서 제시한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지역채널의 광역화 문제입니다. 역시 큰 기업들이 많고 있고, 또 이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광역화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영 합리화라는 이유 때문에 지역을 광역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업의 이익 부분과 또 지역민들의 욕구, 지역방송에 대한 갈망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절충점을 찾는 데 역시 우리 방통위가 나서서 아마 양자의 피해가 없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선을 두어야 한 것은 지역민들의 방송의 권익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후 점점 문제입니다. 지역민들의 방송에 대한 시청자 권익보호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후 점검을 통해서 정확히 권익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라.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20-28-128)

####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라>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지상파방송 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상파방송정책과장입니다. 대구문화방송(주)의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주)마금이 신청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여부를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마금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신청한 대구문화방송(주)의 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변경승인 신청 현황

입니다. (주)마금은 대구문화방송(주)의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방통위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말에 (주)마금이 대구문화방송(주) 주식의 32.5%를 취득했고, 1월 28일 방통위에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월 26일 방통위는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심사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미디어, 경제·경영·회계, 법률 등 9명의 전문가로 운영했습니다. 심사항목은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4쪽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청인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며, 사회적 신용이나 재정적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신청인의 주식취득 목적 및 취득자금의 출처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도, 지상파방송사인 대구문화방송(주)의 주요 출자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청인이 방송의 소유·경영분리 원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방송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변경승인에 대한 의결을 유보하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승인여부와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5월 중 (주)마금에 대해 처분 및 의견청취 사전통지를 하겠습니다. 6월 중에 출자자 변경승인 여부 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 시정명령을 포함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심사위원장으로 진행했었는데 방송법 제15조의2는 방송사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법 시행령은 경영권 실질적 지배를 지상파 방송의 경우는 30%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마금이 대구MBC 주식을 32.5%를 취득해서 이에 대한 출자자 변경승인을 위한 심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사무처 보고처럼 불승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심사위원 8명 전원이 방송의 공적책임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용이나 재정능력도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신청인 의견청취 시간에도 심사위원 전원은 (주)마금이 가장 기초적인 방송의 소유·경영분리 원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또 주식취득 자금도 사모펀드를 언급하는 등 투기 자본이 의심되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말이 있었고, 이러한 주식취득 목적이 대구MBC의 주요 출자자가 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3페이지 '19년 12월 27일에 (주)화성관리공사의 주식을 10.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가 (주)화성관리공사에서 27일에 주식을 획득한 이후 12월 30일에 김지용 씨가 주식을 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애매해서...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마금이 12월 27일 (주)화성관리공사의 주식을 샀고, 30일에 김지용의 주식을 샀다는 뜻입니다. 2개 합산하면 32%가 나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김지용 주식까지 2개를 샀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대구MBC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출자한 (주)마금의 변경승인 심사를 해 주신 김창룡 상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도 고생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신청인이 방송의 공적인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고, 사회적 신용이나 재정적 능력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한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12차 회의 때 본 위원은 (주)마금이 주식 100%가 최다액출자자 남상현의 가족 소유 회사이고, 최근 3년간 휴업 중인 회사로서 영업외수익이나 추가적인 증자가 없다면 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부채만 남아서 사실상 폐업된 회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대구MBC 주식을 취득했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향후 지역방송사의 2대 주주라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마금의 주식취득 자금 출처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어떻게 조달이 된 것입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고 영업비밀이라 확인을 못 했지만 사채를 써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사채를 동원해서요?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허 욱 상임위원

- 심사위원회도 의견청취 결과 밝혔듯이 예를 들면 사채를 동원했다면 그 주식 자금의 상환 또는 보상을 위해서 이자율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방송사의 영향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마금이 주식취득 목적,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송사의 공적 영향력에 대한 사적 남용은 막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마금은 신청서에서 소유자 중심의 경영을 혼재 하겠다고 기재했습니다. 방송의 소유·경영분리 원칙에 대한 기본적 개념마저 없는 사업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승인 거부를 전제로 행정절차법상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무처에서 제시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 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시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가 제시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사무처에서 제시하신 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이후에 승인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마. SBS미디어홀딩스(주)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 (2020-28-129) (일부 비공개)**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결안건 마>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 측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내용 중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먼저 보고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방송정책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SBS미디어홀딩스(주)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주)태영건설이 신청한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의의 의견과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붙임 1>과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액출자자인 태영건설이 ‘티와이홀딩스’ 신설계획을 공시함에 따라 사전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승인 신청 현황입니다.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액출자자인 태영건설은 ‘티와이홀딩스’ 신설 계획을 공시하고 사전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태영건설은 2007년 12월에 SBS의 최대액출자자 변경 승인 시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행각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방통위는 이후 SBS 재허가 조건에 이행각서를 준수할 것을 2010년, 2013년, 2017년에 계속해서 부가한 바 있습니다. 공시 이후 방통위는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기본계획을 지난 4월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미디어, 경제·경영·회계, 법률 등 분야별 9명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심사항목은 방송법에 따른 최대액출자자 등 변경 심사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티와이홀딩스 신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법인 신설 목적의 적절성, SBS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태영건설 최대주주인 윤석민 회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지금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청취는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또 주식회사 상장회사의 공시와도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의견청취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 15시 31분 】

#### SBS미디어홀딩스 최대액출자자 태영건설 의견청취(비공개)

【 17시 08분 】

#### ○ 한상혁 위원장

- 방금 전 의견청취가 종료되었습니다. 상정안건 논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의견청취는 종료했고,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오늘 태영건설 최대주주 윤석민 회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을 반영해서 위법성 해소 등과 관련된 계획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의결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승인여부를 의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마지막 안건은 추가적 논의를 위해서 차기 회의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의결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2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7시 10분 폐회 】